

별첨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아동수당법 개정(‘26.3.)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 ①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5)8세 → (‘26)9세 → (‘27)10세 → (‘28)11세 → (‘29)12세 → (‘30)13세 미만
 - ②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11만원·특별지역 12만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원 추가
-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 구분(입법예고 고시안, 3.27. 공포 예정)>

구분	대상지역
비수도권 (78개)	(부산)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세종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인구감소지역 (89개)	특별지역 (40개)
	우대지역 (49개)

Q2.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 4월부터 만 9세 미만 아동(+17년생)에게 지역에 따라 최대 2만원 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 ☞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서 조례 제·개정, 사업계획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Q3. 2017년생도 아동수당 확대 지급 대상인가요?

- ☞ 2017년생은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30년 13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아동수당 지속 지급됩니다. (확대 지급 대상 해당)

Q4. 2017년 1월 ~ 2018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중단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 ☞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보호자·계좌번호 등 변경정보 확인을 통해 직권신청 되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 기존 신청 정보를 문자로 개별 안내하였으며, 정보 변경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3월 31일까지 변경 여부 회신한 경우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Q5. 4월에 아동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17년 1월~'18년 1월생) 기본 40만원('26년 1월~4월) + 지역별 추가 금액 1~4월분(0~8만원)
 - * 4월 거주 시군구 기준으로 일괄 4개월분(1~4월) 지급 후 1~3월 15일 기준 거주지에 따라 증감
- ※ (월별) 비수도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만원, 특별 2만원

- ☞ ('18년 2월생) 기본 30만원('26년 2월~4월, '26년 1월 기지급) + 지역별 추가금액 1~4월분(0~8만원)
 - * 1월은 아동수당 지급 시군구 기준으로 추가금액 산정, 4월 거주 시군구 기준으로 일괄 3개월분(2~4월) 지급 후 2~3월 15일 기준 거주지에 따라 증감
- ☞ ('18년 3월생) 기본 20만원('26년 3월~4월, '26년 1~2월 기지급) + 지역별 추가금액 1~4월분(0~8만원)
 - * 1~2월은 아동수당 지급 시군구 기준으로 추가금액 산정, 4월 거주 시군구 기준으로 일괄 2개월분(3~4월) 지급 후 3월 15일 기준 거주지에 따라 증감
- ☞ ('18년 4월생~) 기본 10만원('26년 4월, '26년 1~3월 기지급) + 지역별 추가금액 1~4월분(0~8만원)
 - * 1~4월 아동수당 지급 시군구 기준으로 추가금액 산정

Q6. 4월 전에 이사한 경우 우대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지역 우대금액은 매월 15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6-1. (예시) 2월 25일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

- ☞ 1·2월 15일 특별지역 거주, 3·4월 15일 수도권 거주 : 2만원 x 2 = 4만원
 - * 다만 직권신청 아동의 경우 미지급월의 우대금액 4월 거주지 기준 지급 후, 상계

Q6-2. (예시) 1월 25일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 1월 15일 수도권 거주, 2~4월 15일 특별지역 거주 : 2만원 x 3 = 6만원
 - * 다만 직권신청 아동의 경우 미지급월의 우대금액 4월 거주지 기준 지급 후, 상계

Q7.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 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 ☞ 지자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관련 사업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 자료를 복지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Q8.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 법 개정 이후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신규 신청은 3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한 경우 4월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9. 복지로를 통한 계좌변경 신청도 가능한가요?

- ☞ ('18년 4월생~) 복지로를 통한 계좌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17년 1월~ '18년 3월) 지자체를 통해 직권신청한 이후에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계좌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